

한국간호과학회 간호과학자상 규정

2006. 10. 28 제정
2009. 01. 15 개정
2009. 12. 12 개정
2010. 11. 10 개정
2012. 06. 08 개정
2012. 12. 14 개정
2014. 07. 11 개정
2017. 02. 16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6. 14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가 제정한 간호과학자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간호과학자상”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

간호과학자상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제4조 (수상 인원)

본 상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 자격요건)

수상 후보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호학자로 10년 이상 간호업무(교육, 연구, 실무 분야)에 종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 실적이 탁월한 자로 그 연구업적이 우리나라 간호학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수상 후보자 업적)

수상 후보자가 본 학회 회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발표한 학술연구업적과 봉사활동을 고려하되, 연구업적은 최근 5년간의 활동을 중점으로 한다.

제7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회원의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회원학회장이 소정 양식(별첨1)으로 추천한다.

제8조 (추천서 접수)

매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선정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부회장, 총무, 기획법제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 회장은 수상 후보자에 대한 업적심사 관련 업무를 학술위원회에 위촉한다.
3. 본 학회 학술위원회는 접수된 수상 후보자의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전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4. 본 학회 학술위원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5. 수상 후보자가 1명이라도 심사를 진행하며,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본 학회 선정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수상 대상자의 업적자료와 함께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상의 수여)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

제12조 (시상일)

시상일은 매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3조(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본 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대표연구업적에 관한 발표회를 가진다.

제14조(심사료 지급)

전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준용 내규)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윤리 준수)

수상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후에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